

의안번호	2214667
의 퇴 인	강경숙의원
회 답 일	2026.1.27.
추계번호	25C6576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7조의2 (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 실태조사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요양기관, 대행청구단체,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(제2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(제3항) ○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7조의2 (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 실태조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(안 제97조의2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

를 실시하고,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)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평가원”)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- 개정안은 현재 공단과 평가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부당청구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실태조사 법제화에 따라 기존 조사의 규모와 범위 및 기간 등이 확대되고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수행될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행 여부 및 조사 세부 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·방법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는 이미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조사(현지조사)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부당청구 관리·감독 등을 위한 실태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([표 1] 참조)¹⁾
 - － 이에 행정조사 외의 별도의 실태조사 수행 여부, 업무 범위 등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추가 인력 및 예산 추계가 어려움

[표 1] 최근 4년간 현지조사 현황

(매년 말일 기준, 단위: 개소)

조사년도	전체 요양기관 수	조사기관 수 (전체 대비 비율)	부당기관 수
2025	104,903*	567(0.5%)	497
2024	103,308	730(0.7%)	612
2023	101,762	674(0.7%)	514
2022	100,396	610(0.6%)	527

주: 2025.12월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집계 중으로, 11월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로 작성(2026.1.16. 기준)

자료: 보건복지부

1) 참고로, 2025년 요양기관 56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매월 약 79명이며, 1년간 소요된 여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 집행액은 12억 3,164만원임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